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

수용가명 :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연 락 처 : 051-582-4287

㈜서광전기안전기술단

전화 (051) 304-9393

팩스 (051) 305-9393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광전기안전기술단(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의 증표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상 호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전기설비 설치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1(장전동)		
계약최대전력	수전: 55 kw 심야 : 193 kw	공급전압	380V
책임분계점	한전 PAD S/W 2차		
안전관리대행월정수수료	일금 일십만 원정(₩ 100,000) 부가세별도		
계약 유효일자 및 기간	2018년 11월 01일 ~ 2020 10월 31일(2년)		
기 타 사 항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첨 계약서 규정에 의한다.		

첨 부 : 협약서 1부

2018년 10 월 31 일

위탁자 【갑】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1(장전동)

상 호 :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대 표 : 김목경 ㊞

대행자 【을】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운산로 36, 상가204호(괘법동,한신1차)

상 호 : ㈜서광전기안전기술단

대표이사 : 박 흥 곤 ㊞

제5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개월 이상 수수료가 체납 되었을 때.

2)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의 이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방법】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계약 당사자에게 해지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가 도달한 날을 기준하여 계약은 해지한다.

제7조【연락책임자】

1.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각 그 종사자 중 1인을 연락을 취할 연락책임자로 정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연락책임자 또는 그 대무자로 하여금 "을"이 시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입회하도록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급】

1. "갑"은 계약 체결 시 계약유효 당월 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후 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한 당해 월의 대행수수료는 계약 전력별 월간 법정점검 횟수를 기준으로 정산 지불한다.

제9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 "을"이 안전점검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안전점검을 하는 중에 발생한 "갑"시설물 파손 등은 "을"이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0조【기타사항】

1. 설비내용에 따라 법정 점검회수 이상으로 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점검대행료를 점검회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전기설비 기타의 관계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특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장은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사고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에 소요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의 제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토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협 약 서

제1조【계약준수 의무】

1. 본 계약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시설 등의 출입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관리의 범위 및 내용】

1. 점검범위 : 한전 책임 분기점 2차에서 저압부하 1차까지.
2. 점검횟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 2)에 준한다.
3. 점검내용(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점검기록지로 대체함.)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 검토.
   5)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
   6)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작성.
4. 기록유지 관리는 상기 직무에 관한사항 전반에 대하여 기록하고, 기록물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4년)동안 유지 관리한다.

제3조【통지의무】

1. "갑"은 다음의 경우에 그 구체적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사고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심히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3) 사고 및 기타 이상 시에 운전조작을 행할 경우.
   4) 상속 등에 의하여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가 승계 되거나 업종,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주소, 시설물 설치장소가 변경될 경우.
2. "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용을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조 1항의 연락 책임자를 정하였거나 변경이 있을 때.
   2) "을"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사무소명칭, 위치(또는 소재지), 업종 등을 변경한 때.

제4조【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중지】

"을"이 수탁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태로 사실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갑"의 사업장에의 접근이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
3) "갑"의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을"의 수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